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- 가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(2006.3.24)과
관련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설치되는 「긴급
지원심의위원회」의 기능 수행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
- 나.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준칙
변경 사항 중 협의체 위원명단 공개규정 마련

2. 관계법령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

3. 주요골자

- 가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
심의위원회의 기능수행(안 제2조)
- 나. 협의체위원 명단공개 : 협의체 위원 위촉 및 임명 시
위원명단 공개(안 제4조의2)

4. 검토의견

□ 본 조례 개정건은

-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06. 3. 24부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주변에서 만성적 생계곤란과 가정 폭력, 실직이나 폐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과 지원규모 등 적정한 심사를 통하여 긴급지원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하므로써 행정의 안정성 유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

-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을 공개함으로써 분야별 대표성확보와 다양한 기관단체의 참여 유도과 참여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그 참뜻이 있다고 생각됨.

- 또한 우리구를 비롯한 각 구 · 군에서도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등 제반절차를 진행중에 있고

○ 긴급지원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

□ 위 조례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